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7. 12.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년 6월 24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13년 7월 1일
- 라. 상정일자 :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2013년 7월 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복지국장 김찬재)

가.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적립·운영되고 있는 자활기금에 대하여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보완하여 자활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안 제2조2)

- 기금의 용도 추가 신설(안 제3조제6호, 안 제3조제7호)
 -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신설
 -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방법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9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태선)

가.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자활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의 활용도 제고와 자활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나. 주요내용을 보면

기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 까지로 명시하였으며,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 등 기금의 용도를 추가 신설하고 임대지원에 따른 금액,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적립되는 자활기금을 적절하게 활용하고자 기금용도를 추가 신설하고, 신설에 따른 지원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상위법에서 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보완 개정하여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19 호
----------	---------

제출연월일 : 2013. 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구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사업의 탄력적 수행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법에 따른 보장비용의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의 운용 극대화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안 제2조의2)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 까지로 명시

다. 기금의 용도 구체적 명시 (안 제9조의2)

-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신설
-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신설

라.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 규정 신설

- 지원금액, 지원방법, 지원기간, 지원취소 등 구체적 명시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3.5.2~ 5.22, 20일간)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대상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반영)

- 제9조의2제5항 중 “지원 중지에 따른 대여자금 및 이자는 상환한다.” 삽입

(4) 성별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제2조제6호 중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을 “기금의”로, “기금운용수익금”을 “운용 수입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서”를 “각 호에서”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이차보전”을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제5호 중 “기타 자활사업”을 “자활사업”으로, “연구”를 “연구·평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
7.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제3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하며,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1인과”를 “1명과”로 하고, “1인을”를 “1명을”로 하며, “10인”을 “10명” 한다.

제5조제3항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구의회 의장이”를 “구의회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해촉된”을 “위촉 해제된”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잔임기간으로”을 “남은 기간으로”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간사1인을”을 “간사 1명을”으로 한다.

제5조의 2를 “제5조의2”로 한다.

제5조의 3을 “제5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3.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변경

제5조의 4를 “제5조의4”로 한다.

제5조의 5를 “제5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6조제2호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를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제6조제4호 중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라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을 “지원신청”으로, “하는”을 “할”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를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를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으로,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를 “7천만원의 범위”로, “구청장”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를 “자활기업은 5년거치후 5년이내”로, “10년 이내”를 “같은기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사업자금의 대여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을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조제4항제2호 중 “6월이상”을 각각 “6개월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목적 이외의”를 “목적 이외로”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을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금리차이 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 자금간에 금리차이”로 ,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를 “제1항에 따른 금리차이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구청장은 금리차이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금리차이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 ① 제3조제

6호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중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점포(사업장)확보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1억원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점포를 임대하여 해당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한 지역자활센터에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자활센터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 임차인, 보증기관 등 3자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보증기관은 임대보증금 반환처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된다.

③ 전세점포 임대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전세점포 임대 지원에 따른 대여이자는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 구청장은 전세점포 임대 지원을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지원 중지에 따른 대여자금 및 이자는 상환한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지원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제목 “(기금의 운용계획)”을 “(기금의 운용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요항목인 장·관·항의”를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 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p>	<p>제 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 ----- -----.</p>
<p>제2조(기금의구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제2조(기금의구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 4.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u></p>	<p>5. <u>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u></p>
<p>6. <u>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u></p>	<p>6. <u>기금의 ----- 운용 수입금</u></p>
<p>〈신설〉</p>	<p>7. <u>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u></p>
<p>〈신설〉</p>	<p>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p>	<p>제3조(기금의 용도) ----- 각 호에서----- -----.</p>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을 위한 사업 (단,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신 설>

<신 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생략)

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이하 “구
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
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
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
다.

1. 자활기업이 -----
-----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자활기업-----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
라 -----

4.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
하는 사업

5. 자활사업----- 연구·평
가 -----

6.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
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

7.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구청장-----

----- 제34조제3항-----
-----.

③제2조에 따라 -----
----- 각 호의-----
-----.

1. 2. (생략)

3.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⑤ (생략)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략)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3. 복지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덕망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④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

② ----- 1명과 ----- 1명을 ----- 10명 -----
-----.

③ -----

----- 각 호의 ----- 사람 -----
-----.

1. (현행과 같음)

2. 구의회에서 -----

3. -----
----- 사람 -----
----- 사람 -----

④ -----

----- 위촉 해제
된 -----.

⑤ -----

----- 남은 기간으로 -----.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자활주거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의 2(위원장의 직무)

① ~ ② (생략)

제5조의 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 (생략)
3.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 변경
4. (생략)
5. 기타 기금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 4(위원회의 운영)

① ~ ② (생략)

제5조의 5(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 제31조

⑥ -----
- 간사 1명을 -----
-----.

제5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3(위원회의 기능) -----
-----.

1. ~ 2. (현행과 같음)
3.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변경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제5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5(수당 등) -----

- 범위에서 -----
--.

제6조(지원대상) ----- 따라 -----

----- 각 호와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 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2. ----- 제31

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관·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
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7조(지원신청 등)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
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
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
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
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
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
나 10년 이내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
다. 다만, 제 2호의 상환기간이 경과한

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
관

4. 영 제9조에 따른 -----

5. 제3조제5호에 따른 -----

제7조(지원신청 등) ①제6조에 따라 개
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

-----.

②-----
----- 지원신청 -----
----- 할 -----

-----.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
----- 7천만원의 범
위-----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

②----- 자활기업은 5
년거치후 5년내 -----
-- 같은기간 내 -----.

③사업자금의 대여 이자는 연 3퍼센트
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율을 적용한다.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 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신설>

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자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현행과 같음)
2. -----
----- 6개월 이상 -----
----- 6개월 이상 -----

3. 제7조제2항에 따른 -----

목적 이외로 -----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금리차이 보전) ①자활기업이 -----

-----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 자금간에 금리차이 -----
----- 범위에서 -----
-----.

②제1항에 따른 금리차이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 -----
-----.

③구청장은 금리차이 보전을 받는 자활 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금리차이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의 2(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 ① 제3조 제6호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중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점포(사업장)확보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지역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점포를 임대하여 해당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한 지역자활센터에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자활센터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 임차인, 보장기관 등 3자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보장기관은 임대보증금 반환처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된다.

③ 전세점포 임대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전세점포 임대 지원에 따른 대여이자율은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 구청장은 전세점포 임대 지원을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지원 중지에 따른 대여자금 및 이자는 상환한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 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지원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주거담당주사로 한다.

③ (생략)

제12조(기금의 결산)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 운용성과 분석결과 및 복식부기회계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기금운용관-----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 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